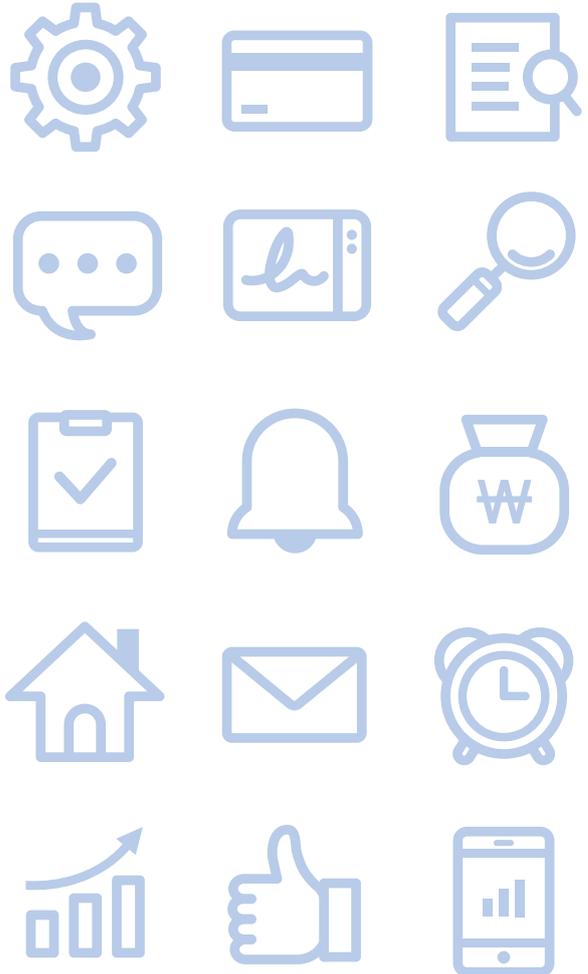


# 스마트폰 앱 선택재 안내서

2022. 12.





---

# 스마트폰 앱 선택재 안내서

---

# 목차

<b>I. 추진 배경</b>	5
<b>II. 용어 정의</b>	8
1. 선택재앱	8
2. 선택재앱제공자	9
3. 필수앱	10
4. 선택앱	11
<b>III. 준수 사항</b>	12
1. 부당한 선택앱의 삭제 등 제한 금지	12
2. 이용자 보호 조치	16
3. 위반행위 모니터링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7
4. 문의사항 안내처	17
<b>IV. 부록</b>	18
1. 전기통신사업법	18
2. 스마트폰 앱 선택재에 관한 가이드라인 (미래부, '14년)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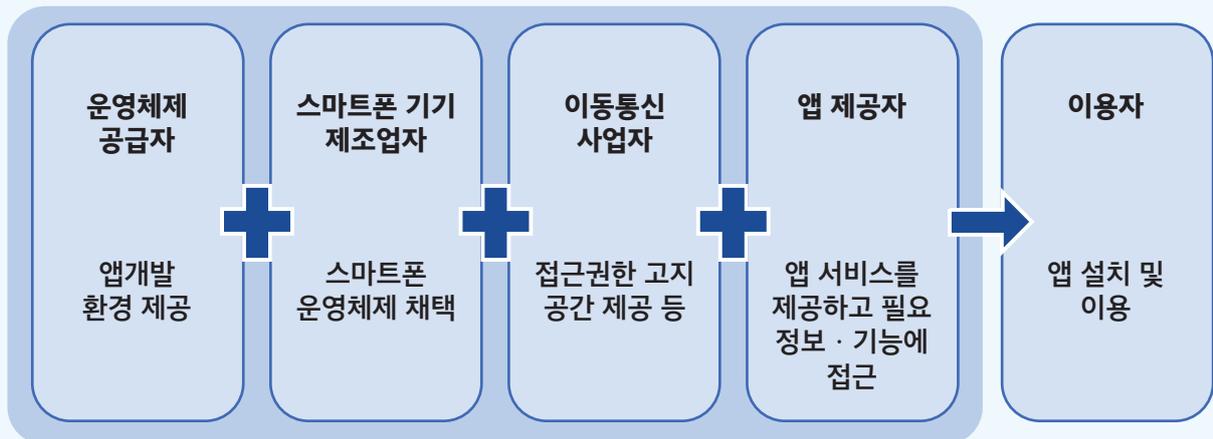
# 01 추진 배경



- 스마트폰 앱 선택재로 인한 스마트폰 메모리, 데이터·배터리 소진, 소비자의 앱 선택권 제한 등 국내 이용자의 편익 저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폰 앱 선택재 관행으로부터 이용자의 편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앱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체계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앱 선택재 개요

### 선택재앱 제공자



- '1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舊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 및 서비스 혁신을 제고하고자 사업자 자율이행 방식의 「스마트폰 앱 선택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실제 선택재앱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선택재앱이 존재하는 등 자율적 규제 한계가 발생하여 구속력을 갖는 명시적 규정 마련이 요구되었습니다.

## 추진 배경

- 방송통신위원회는 '16.12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정 하였습니다.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의 한 유형인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추가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사목 3))

### 관련 규정

舊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5호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전기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18.12월)을 통해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와 별도의 규정으로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삭제에 준하는 조치” 개념이 추가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8호)
- 현재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8호의 적용 범위와 구체적 내용에 관한 사항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세부적인 안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관련 규정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 한편, 최근에는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용량·메모리의 증가 등으로 앱 선택재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 이에 앱 선택재 규제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동하여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본 안내서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서에 앱 선택재와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폰 선택재앱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스마트폰 앱 설치에 관한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스마트폰 앱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02 용어 정의



## 1. 선택재앱

- 선택재앱은 스마트폰을 한 번도 기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스마트폰에서 앱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와 함께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된 앱을 뜻합니다.
- ※ 앱은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으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줄임말이며,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제3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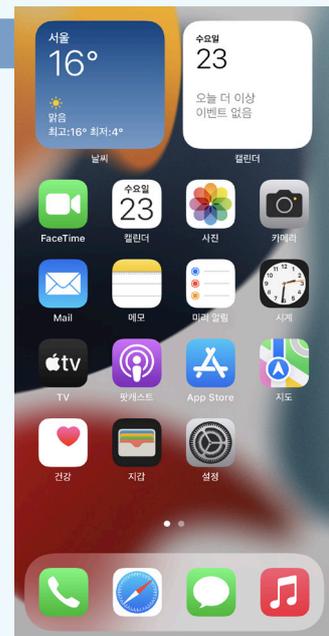
### 참고

### 선택재앱 예시

#### Android



#### i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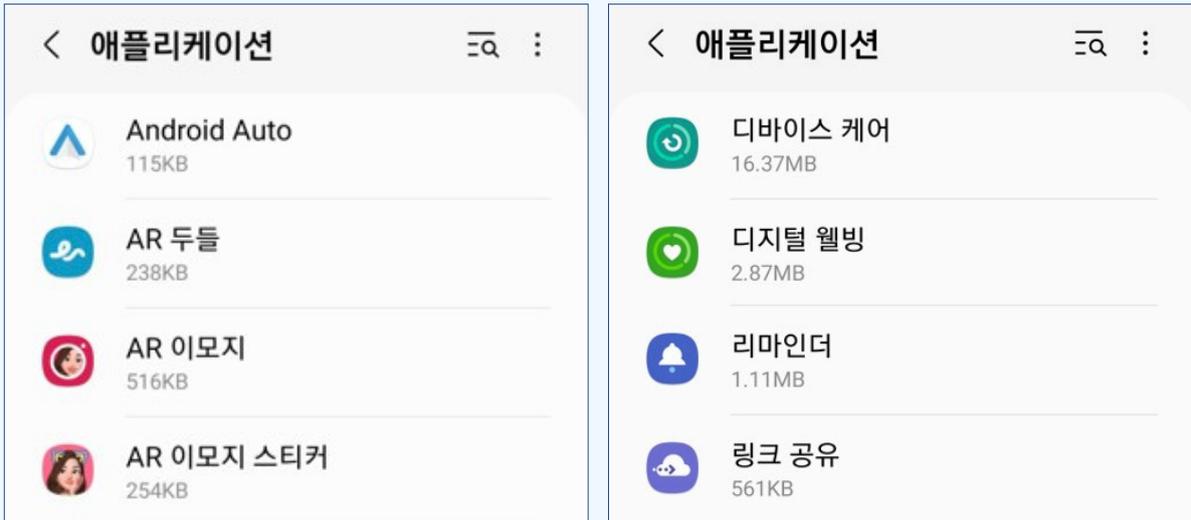


- 선택재앱 중 일부는 스마트폰 화면에 아이콘 형태로 표시되지 않는 이른바 “비공개앱”의 형태로 선택재되기도 합니다.
- 선택재앱은 스마트폰 메모리 제한, 데이터·배터리 소진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비공개앱도 선택재앱의 일부로 다른 선택재앱과 동일하게 규율되어야 합니다.

- 비공개앱의 경우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사용자가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삭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이용자의 선택권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비공개앱이 앱 선택재 규제의 우회로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선택재앱과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

### 비공개앱 예시



## 2. 선택재앱제공자

- 스마트폰, 즉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앱을 선택재할 수 있는 사업자로 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앱 제공자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
  - ※ 예시 : 네이버, 카카오 등
- 기기 제조업자 :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생산하는 사업자
  - ※ 예시 : 삼성전자, 애플, 화웨이 등

### 관련 규정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 용어 정의

- 운영체제 공급업자 :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앱을 실행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반 환경, 즉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자
- ※ 예시 : 구글(안드로이드OS), 애플(iOS), 마이크로소프트(윈도우즈OS) 등

### 관련 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③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동통신사업자 :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 예시 : SKT, KT, LGU+, 알뜰폰사업자 등

## 3. 필수앱

- 필수앱은 선택재앱 중 일반 이용자의 인식에 따른 스마트폰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거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설치 및 운용에 요구되는 앱을 뜻합니다.
- 선택재앱이 필수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 이용자의 스마트폰 이용행태, 일반 이용자의 인식, 신기술에 대한 접근성, 신규 운영체제(OS)에 따른 최적화 필요성, 스마트폰 이용의 안정성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이용자가 임의로 삭제할 경우 선택재앱제공자의 주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단말장치의 시스템 및 앱 구동이 저해되는 경우나, 높은 수준의 시스템 접근 권한이 요구되어 이용자가 임의로 삭제할 경우 보안 문제가 발생하거나, 앱 마켓에서 재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재설치 시 시스템 연계 기능의 구동이 제한되는 경우 등은 필수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필수앱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ICT 기술 융합·발전에 따라 스마트폰에 새로 적용되는 신기술(AI, IoT, VR, AR, NFC 등)의 보급·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ICT 기술 발전 수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

## 필수앱 예시

### Android

	갤러리 4.33MB
	메시지 3.86MB
	시계 16.37MB
	전화 4.09MB
	카메라 586KB

### iOS

	전화	>
	메시지	>
	사진	>
	카메라	>

## 4. 선택앱

- 선택앱은 필수앱을 제외한 선택재앱을 뜻합니다.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은 통신단말장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 즉 선택앱의 부당한 삭제 등 조치 제한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실질적 규제 대상은 선택앱에 한정됩니다.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능은 필수앱이 아닌 선택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① 전기통신사업법상 선택재앱 규제를 우회할 목적이 있는 경우
  - ② 필수앱과의 관련성, 이용자 편익 등에 비추어 별도 앱으로 구현 시 선택앱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기능을 그와 무관한 필수앱에 부당하게 결합하는 경우
  - ③ 선택앱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기능의 사용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03 준수 사항



## 1. 부당한 선택앱의 삭제 등 제한 금지

- (삭제 등의 부당한 제한 금지) 선택재앱제공자는 이용자가 선택앱을 삭제하거나 선택앱에 대하여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삭제”와 “삭제에 준하는 조치”의 선후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택앱에 대한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 여부는 선택재앱제공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 “보안 등의 사유로 높은 수준의 시스템 권한이 요구되어 이용자가 앱 마켓을 통하여 재설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삭제 시 다른 앱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삭제에 준하는 조치 요건) 삭제에 준하는 조치는 “사용중지”, “사용안함”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이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실행 또는 업데이트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서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① 조치된 앱의 아이콘이 이용자의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표시되지 않을 것
  - ② 조치된 앱에 대한 데이터가 램(RAM, 휘발성 메모리)에서 삭제될 것
    - ※ 램이란 스마트폰의 주기억장치로서 전원이 켜져 있을 때는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다가 전원이 꺼지는 경우 정보가 없어지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사용 중인 각종 앱을 띄우고, 필요에 따라 빠르게 프로세서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③ 이용자의 명시적인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조치가 해제되지 않을 것
- 다만, 위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앱을 일시적으로 종료하는 것에 불과한 조치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

## 앱삭제의 예시

### Andro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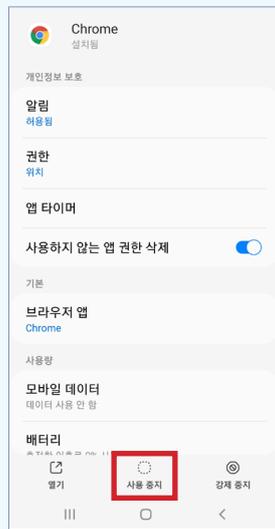


### iOS



## 참고

## 삭제에 준하는 조치의 예시



## 참고

## 강제 중지의 예시



## 준수 사항

---

- (부당성 판단기준) 선택재앱제공자는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이하 “삭제 등”)를 제한하는 행위가 선택재앱의 삭제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이용자 이익 증대 효과와 다른 앱 제공자와의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 저해·침해 효과를 비교하여 판단하되,
  - 이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① 선택재앱제공자의 선택재 의도나 목적
    - ② 이용자의 앱 선택권 제한, 앱 이용 불편 등 이용자 이익저해 발생 여부와 그 정도
    - ③ 경쟁관계에 있는 유사앱의 존재 여부
    - ④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일·유사 앱의 삭제 등에 대한 제한 설정 여부
  - 다만, 이하의 예시를 포함하여 삭제 등에 대한 제한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①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 의무가 부과된 경우
    - ② 스마트폰 이용의 안정성·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③ 정보취약계층의 앱 접근성·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경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경우 등 사회·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효용성이 높은 경우
    - ④ 신기술 도입·확산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특정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기 등 제품의 특성을 고려 시 불가피한 경우

## 참고

-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에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7-4호)

제3조(부당성 판단기준) ①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여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가 되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1. 행위주체와 관련한 요소

- 가. 행위주체가 부당한 조건 또는 제한이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곤란하게 하여 이용자 선택권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 나. 행위주체가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기통신서비스를 현저히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제한, 차별하여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지 여부

### 2. 해당 서비스 시장과 관련한 요소

- 가. 해당 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 여부
- 나. 해당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 제공의 필수적인 요소인지 여부
- 다. 해당 서비스 및 다른 서비스의 대체 가능 여부

### 3. 행위로 인한 영향과 관련한 요소

- 가. 이용약관 등을 통한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 여부 및 해당 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선택 또는 이용의 제한 정도
- 나. 해당 서비스 및 다른 서비스 발전이 저해되어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편익 등이 상당히 저해되는지 여부
- 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잠재적 매출 손실 등 불이익 발생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으로 실질적인 이용자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전체 이용자의 편익이나 후생증대 효과가 큰 경우,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한 경우, 행위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 해당 전기통신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경우, 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한 불가피한 조건 또는 제한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준수 사항

- (제한 여부 판단기준) 삭제 등에 대한 제한은 이용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삭제 등 조치를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며 다음의 경우에도 삭제 등의 제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① 일반 이용자가 삭제 등 조치를 취하기 현저히 곤란하게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삭제 등의 조치를 사실상 제한하는 경우
  - ② 삭제 등 조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불이익을 과장하여 삭제 등 조치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 가령 삭제 등 조치 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함에도 이용자에게 “삭제 등 조치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삭제 등에 대한 제한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2. 이용자 보호 조치

- (정보 제공) 선택재앱제공자는 필수앱과 선택앱을 구분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선택재앱의 기능, 종류 및 수량, 이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장 메모리의 크기 등을 각종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관련 정보의 전부 혹은 일부가 공개된 경우 이용자가 이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미비한 정보는 보완하여 공개하도록 합니다.
- (과다설치 금지) 선택재앱제공자는 스마트폰에 선택재앱이 과다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선택재앱이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삭제 편의 제고) 선택재앱에 대한 삭제 등 조치 방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이용자가 직접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 삭제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재앱제공자는 이용자가 선택재앱에 대해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삭제 등 편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 3. 위반행위 모니터링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모니터링 기관)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니터링 전문 기관을 지정하고 이 안내서의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모니터링 기관은 선택재앱과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안내서의 위반행위의 확인 등 자율규제를 수행합니다.
  - 선택재앱제공자는 선택재앱과 관련하여 안내서 준수 및 모니터링 기관의 위반행위 확인 등 자율규제에 적극협조 하여야 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시 안내서에서 정한 사항의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4. 문의사항 안내처

- 방송통신위원회
  - 이용자정책국 이용자보호과 02-2110-1544
-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K-META)
  - 이용자보호본부 이용자보호팀 070-8765-8450, user-protection@k-meta.or.kr

# 04 부록



##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폐기·은닉·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2.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 회계규정 등의 변경
3.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4. 전기통신사업자 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5.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6. 금지행위의 중지
7.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8.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 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9.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10.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 처리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9조(벌칙)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4조(과태료) ①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17.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스마트폰 앱 선택재에 관한 가이드라인(미래부, '14년)

(목적) 스마트폰에 선택재(先搭載)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내부저장소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스마트폰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정의>

(선택재앱의 정의) '선택재앱'은 스마트폰을 한 번도 기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와 함께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된 앱을 말한다.

(필수앱의 정의) '필수앱'은 선택재앱 중에서 해당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거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운용에 요구되는 앱을 말하며, 필수앱 이외에 스마트폰에 선택재되는 앱은 '선택앱'이라고 정의한다.

- ※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이란 전화, 문자메시지 송수신, 카메라 기능 등 스마트폰이 갖추고 있는 하드웨어상의 특징을 의미함
- ※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설치 및 운영이란 개별 스마트폰을 위한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앱거래소 진입 및 관리를 위한 사항,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에서 정하는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기능과 관련된 사항 등을 의미함

(선택재앱제공자의 정의) '선택재앱제공자'란 스마트폰에 앱을 선택재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업자들을 말한다. ①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사업자(기기 제조업자) ② 스마트폰 구동을 위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사업자(운영체제공급업자) ③ 스마트폰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

### <이용자 편익 제고>

(이용자 선택권 보장) 이용자가 원할 경우 선택재앱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한 선택앱을 스마트폰의 내부저장소(메모리)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용자 불편 최소화) 선택재앱제공자는 스마트폰에 과도한 선택재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선택재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정보공개 내용) 선택재앱제공자는 선택재앱의 종류 및 수량과 이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부저장소의 크기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지해야 한다.

※ 관련 정보의 전부 혹은 일부가 공개된 경우 이용자가 이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미비한 정보는 보완하여 공개한다.

### <이행 시기>

(이용자 편익 제고) 선택앱에 대한 삭제 기능 구현의 경우 가이드라인 공표 이후 출시될 모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기존 출시 기기에 대해서는 기기의 기술적 특성 및 기기에 탑재된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세부사항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적용하도록 한다.

(정보공개) 정보공개는 현재 판매 중인 기기와 출시 예정인 기기를 대상으로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한다.

2014. 1. 23.  
미래창조과학부





---

# 스마트폰 앱 선택재 안내서

---